#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655

발의연월일: 2022. 7. 25.

발 의 자:김상훈·김영선·배준영

엄태영 · 이명수 · 이인선

이철규 · 임병헌 · 조명희

태영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특례를 두어읍 또는 면에 소재하거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세값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06조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를 "제1호"로, "적용하며"를 "적용하며, 제4호의2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u>제1호, 제4</u>	<u>제1호</u>
<u>호의2</u> , 제5호, 제9호의2, 제9호	
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	
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u>적용</u>	<u>적용</u>
<u>하며,</u>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	<u>하며, 제4호의2는 2024년 12월</u>
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하고
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u>체결된 것에만 적용하</u>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u>며</u>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